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122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1225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1029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덕호

변론 종결2022. 6. 7.

판결 선고2022. 10. 25.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1029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9,046,9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9,046,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30. 접수 제89419호로 2016. 9.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71,596,03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596,0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1행의 "1,655,800,000원"을 "1,655,9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20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21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이 법원 2015카합10163)"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016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20, 21호증, 을 제4, 10 내지 2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일부포기를 이유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알고 있었고, 늦어도 C이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한 2019. 2. 13.경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2. 24.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6, 17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6. 2. 23. 별지2 목록의 제1항 기재 각 상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② 2016. 2. 1. 같은 목록의 제2항 기재 D아파트 중 P호 내지 Q호에 관하여 2016. 1.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R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2. 23. 위 P호 내지 Q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③ 같은 목록의 제2항 기재 D아파트에 대한 각 부동산경매절차(별지2 목록의 사건번호란 기재 사건번호 참조)에서 근저당권자이자 가압류권자로서 절차에 참여한 사실, ④ 천안시 동남구 N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T, U, V, W)에서도 2016. 10. 14. 차순위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2017. 4. 13.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순위 15번으로 33,076,655원을 배당받은 사실, 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일부포기 이유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준 사실, 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명1194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채무자 C은 2019. 2. 13.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9. 2. 13. 무렵 C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2. 24.로부터 1년 전인 2019. 2. 24.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C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재산상태가 간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C이 2019. 2. 13.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31억 2,100만 원 상당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상회하는 금액의 적극재산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위 재산목록의 기재만으로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갖고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특히 원고가 2016. 9. 30.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의 동생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알기 전까지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에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C에게 16회에 걸쳐 합계 1,655,9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이 2016. 1. 21.까지 원고에게 931,890,000원을 변제한 사실, C이 2013. 12. 26.부터 2016. 4. 2.까지 27회에 걸쳐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외에 353,053,000원을 이자금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077,063,000원(= 대여금 채권 1,655,900,000원 - 변제금 931,890,000원 + 이자금 명목 353,053,000원,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삼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이 사건 처분행위시인 2016. 9. 26. 무렵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각 재산목록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목록>

1	[건물]D아파트 E동 1층 X호	128,000,000	갑 제7호증의 1, 제16호증
2	[건물]D 아파트 E동 1층 Y호	497,000,000	갑 제7호증의 1, 제16호증
3	[건물]D 아파트 E동 3층 Z호	148,000,000	갑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1, 제16호증
4	[건물]D 아파트 E동 3층 AA호	145,000,000	갑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2, 제16호증
5	[건물]D 아파트 E동 3층 AB호	148,000,000	갑 제7호증의 4, 제8호증의 3, 제16호증
6	[건물]D 아파트 E동 3층 AC호	148,000,000	갑 제7호증의 5, 제8호증의 4, 제16호증
7	[건물]D 아파트 E동 4층 AD호	146,000,000	갑 제7호증의 6, 제8호증의 5, 제16호증
8	[건물]D 아파트 E동 4층 AE호	146,000,000	갑 제7호증의 7, 제8호증의 6, 제16호증

1	[건물]D아파트 E동 1층 X호	128,000,000	갑 제7호증의 1, 제16호증
9	[건물]D 아파트 E동 4층 AF호	147,000,000	갑 제7호증의 8, 제8호증의 7, 제16호증
10	[건물]D 아파트 E동 4층 AG호	131,000,000	갑 제7호증의 9, 제16호증
11	[건물]D 아파트 E동 5층 AH호	150,000,000	갑 제7호증의 9, 제16호증
12	[건물]D 아파트 E동 5층 F호	140,000,000	갑 제1호증,을 제10호증
13	[건물]D 아파트 E동 5층 AI호	147,000,000	갑 제7호증의 10, 제8호증의 8, 제16호증
14	[건물]D 아파트 E동 5층 AJ호	148,000,000	갑 제7호증의 11, 제8호증의 9, 제16호증
15	[건물]D 아파트 E동 5층 AK호	131,000,000	갑 제7호증의 9, 제16호증
16	[건물]D 아파트 E동 7층 P호	199,000,000	갑 제7호증의 12, 제16호증
17	[건물]D 아파트 E동 7층 S호	107,000,000	갑 제7호증의 12, 제16호증
18	[건물]D 아파트 E동 7층 AL호	93,000,000	갑 제7호증의 12, 제16호증
19	[건물]D 아파트 E동 7층 AM호	181,000,000	갑 제7호증의 12, 제16호증
20	[건물]D 아파트 E동 7층 Q호	181,000,000	갑 제7호증의 9, 제16호증
21	[건물]천안시 동남구 N, AN	1,151,897,690	을 제19호증의 2
22	[토지]천안시 동남구 N, AN	660,660,000	을 제19호증의 1
적극재산 합계		5,073,557,690원	

<소극재산 목록>

1	AO조합에 대한 채무	900,000,0001)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1.2) ×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9갑 제9호증
2	H조합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자 G)	487,000,000	갑 제10호증
3	H조합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자 AP)	1,017,493,620	을 제19호증의 1, 2을 제21호증
4	국세 등 채무	407,385,64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5	I, AQ, AR, AS, AT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619,171,000	갑 제13호증의 1, 2
6	원고에 대한 채무	1,077,063,000	
7	AU에 대한 채무	110,000,000	갑 제9호증의 1
8	AV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20,000,000	을 제21호증
9	AW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5,000,000	을 제21호증
10	AX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5,000,000	을 제21호증
11	A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5,000,000	을 제21호증
12	AZ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40,000,000	을 제21호증

1	AO조합에 대한 채무	900,000,0001)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1.2) ×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9갑 제9호증
13	B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5,000,000	을 제21호증
14	B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5,000,000	을 제21호증
15	B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40,000,000	을 제21호증
16	B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40,000,000	을 제21호증
17	B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0,000,000	을 제21호증
18	BF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00,000	갑 제19호증의 1, 2
19	B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30,000,000	갑 제15호증의 1
20	B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25,000,000	갑 제15호증의 4
21	B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20,000,000	갑 제15호증의 2
소극재산 합계	5,118,113,260원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아파트 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J 대 571m², K 대 260m²에 원고의 2014. 3. 4.자 2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C)와 2014. 12. 12.자 3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C)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위 부동산에 H조합의 채권최고액 3,380,000,000원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의 2, 3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하여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1,077,063,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그 한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다) C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올 제3, 10,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과 형제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는 2016. 7.경 C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5.부터 2016. 8. 11.까지 매매대금 중 4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2016.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천만 원 지급 이후인 2016. 9. 26. 작성된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은 14,000,000원, 잔금은 1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급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또한 피고는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6. 9.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AO조합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지급 통장과 도장을 C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형제관계라고 하더라도 통장과 도장을 직접 넘기는 방식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C이 실제로 피고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거래내역증명서상 C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5,800,000원 뿐이고 현금으로 인출된 93,650,000원을 실제로 C이 인출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호증, 을 제13, 15,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2021. 1. 26.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2022. 5.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15. 10. 27. 접수 제125874호로 대한민국(처분청 천안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G이 채무자이고 H조합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3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9. 30.에 위 각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압류가

해제된 사실, 채무자 C이 위 압류 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처분청 천안세무서)에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H조합의 경우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37,000,000원이었고 채무자 C이 위 원금 3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3,161,180원, 연체이자 471,880원의 합계 40,633,06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우선변제되어야 할 압류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져 있다가 말소된 대한민국(처분청 천안세무서)의 압류등기의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채무자 C이 위 압류등기 말소를 위하여 변제한 돈으로 보이는 천안세무서에게 지급한 30,000,000원과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피담보채권액 40,633,060원의 합계 70,633,06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가 109,68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시가 상당액에서 70,633,060원을 공제하면 39,046,940원이 남는다.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보다 작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39,046,940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를 앞서 인정한 취소의 범위인 39,04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9,046,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종

판사윤현정

판사최희정

별지

1)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1.2) × 9